

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정책본부

# 해외조세동향보고

Issue 5, 2009년 06월

# 유럽 주요국 조세동향

### 유럽연합

- □ 유럽연합 이사회, 수입품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한 세법 개정
  - 현재 유럽연합회원국 내에서는 Missing Trader Intra Community(MTIC)와 같은 부가가치세 탈루 사기가 만연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
  - 최근 유럽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이러한 부가세 탈세로 인하여 연간 400억 유로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, 이는 총 세수의 10%에 달하는 금액
    -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공급자가 다른 회원국 거주자일 경우에 한하고 있으나 자국세법의 부적절한 적용으로 인해 수입물품의 이동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
  - 2009년 6월, 유럽의회는 공급자가 VAT(Value Added Tax)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, 이를 통하여 VAT 탈루를 방지하고, 수입자는 이를 부가세 면세를 위한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

- 또한, 수입자가 수입국 관계기관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만 부가세 면제 혜택 부여
  - 수입 회원국에서 발행된 부가가치세 식별 번호
  - 수입품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부가세 식별번호
  - 수입물품이 회원국으로부터 운송되고, 다른 회원국으로 배송 된다는 증빙

# 독일

- □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를 위한 조세피난처와의 협력 방안 모색
  - 2009년 6월 23일, 독일 재무부 주최 "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장관회의"를 19개국 유럽 재무장관이 참가한 가운데 베를린에서 개최
  - 이 자리에서 그간 OECD 본부 주도로 진행하여온 역외금융센터 (조세피난처)와의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 현황 및 각국 정부가 개별적으로 체결한 양자 간 협정 진척 상황에 대해 논의
  - 향후 국제적 공조를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역외금융센터를 통한 조세회피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및 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음

# 아시아 주요국 조세동향

#### 일본

- □ 일본의 2009년도 세제 개편 (국제조세 관련)
  - 1) 외국배당소득 공제
    - 현행 세법 규정
      - 외국 배당소득도 과세소득에 산입하고, 주식 소유비율에 관계 없이 일반 법인세율로 과세
    - 개정 세법 규정
      - 일본기업이 외국기업의 수권주식의 25%를 6개월 또는 그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하고 있는 경우, 외국기업으로 받은 배당금의 95%를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
      - 또는 25%의 주식소유비율은 1개 기업에 국한하고, 관계기업 집단이 25%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의 적용을 배제함
      - 동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
  - 2) 외국납부세액 공제
    - 현행 세법 규정
      - 배당소득원천징수가 외국기업 소재지에서 이루어 질 경우 이 중과세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시행

- ①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,
- ② 배당소득세액을 배당금을 받는 자회사가 납부한 경우,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, 특히 ②의 경우 "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"라 함

#### ○ 개정 세법 규정

- 위에서 언급한 외국배당소득 공제제도 시행으로 공제된 배당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이중 공제 받을 수 없고, 이를 통해 잠재적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
- 3)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규정 (Anti-Tax Haven Rules)
  - 현행 세법 규정
    - CFC(Controlled Foreign Companies, 피지배외국법인)의 유보이익을 산정할 때 유보이익은 일본투자자의 과세소득에 합산
      - ① CFC 수증 배당금을 CFC 유보이익으로 산정
      - ② 배당소득원천세 부과 대상인 CFC 지급 배당금이 유보이익의 25% 이상일 경우 유보이익에서 이를 차감 가능

# ○ 개정 세법

- CFC의 유보이익을 산정할 때 배당금 지급액은 유보이익에서 차감 불가
- 위에서 언급한 개정 세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, 3월 31일 결산법인인 경우 2009년 4월 1일 ~ 2010년 3월 31일에 발생된 유보이익부터 개정 세법을 적용함

#### 중국

#### □ 외국투자자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

- 2008년 1월 세제개혁 이전에는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별도의 외국기업소득세를 두어 외국인 투자기업 및 투자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었으나, 세제개혁 이후 이를 모두 폐지함
- 기존 외국기업소득세법에 의하면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를 면제
  -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자(주주)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 배당소득원천세를 면제함
  - 외국주식거래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에 배당소득세를 면제함
    - \*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(일명 H 주식, H shares) 및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(N shares)
- 신규 기업소득세로의 통합으로 기존 배당소득 원천징수 면제 혜택은 폐지되고, 원천징수를 강화하도록 개정
  - 2008년 1월 이전 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은 소득세 면제
  - 2008년 1월 이후 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은 10%의 소득세 부과
- 홍콩증권거래시장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배당금 문제
  - H share에 대해 10%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원칙
  - 투자자 거주지국과 별도의 조세협약(일반적으로 10% 이하)이 체결된 경우, 관련 협약에 의거 원천징수세액 환급